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1. 주거이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위임(안 제16조의2)

안 제16조의2는 주거이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이전 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됨.

다만, 주거이전 지원은 국민의 주거권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법규명령인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또한, 주거 관련 법령에서 주거지원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대부분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개정대상 법률인 현행 「주거기본법」은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20조(주거실태조사), 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등에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특히 현행 제24조 제4항은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주거이전 지원과 같이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법률 내 다른 규정들과의 정합성 및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대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수정안을 제시함.

<안 제16조의2에 대한 수정의견>

개정안	수 정 의 견
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u> <u>이 경우 주거이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u>	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u> <u>이 경우 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